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7. 15 선고 2019나12980(본소), 2019나12997(반소) 판결
[공사대금 · 공사대금 반환청구]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7. 15 선고 2019나12980(본소), 2019나12997(반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7가합182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이찬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민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1. L

2. M

승계참가인 1,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이찬희

3. N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육현창

변론 종결2021. 5. 20.

판결 선고2021. 7. 15.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7가합1829(본소), 2018가합3549(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792,4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21.

7.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와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들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와 승계참가취지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에게 271,880,46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L에게 202,453,869원, 원고 승계참가인 M에게 50,729,630원, 원고

승계참가인 N에게 65,805,6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33,792,417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33,792,417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880,46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5행의 "2015. 12. 5.경"을 "2015. 12. 7."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0행을 "다. 이 사건 1차 토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토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 공사기간 2016. 12. 1.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3행의 "2017. 2.경"을 "2017. 1. 25.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7행 [인정근거]에 "을 1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4쪽 8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귀속되거나 그에 관한 추심권한이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는 아래의 전부금 또는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271,880,462원(=590,869,583원-202,453,869원-50,729,630원-65,805,6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 승계참가인 L은 201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타채2089호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중 202,453,869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7. 25. 확정되었다.

② 원고 승계참가인 M는 2018.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타채2149호로 원고의 이 사건 1, 2차 토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50,729,63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6. 15. 확정되었다.

③ 원고 승계참가인 N는 2019. 2.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채736호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중 65,805,622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2.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 판결 4쪽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1차 토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대금 3,313,6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주장의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제1심 판결 5쪽 7행의 "갑 제9, 12호증"을 "갑 9~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1차 토공사 계약을 변경하면서 사급자재대 중 골재 수량을 99,976m³에서 81,760m³로 줄이고 하도급대금을 3,753,600,000원에서 3,313,6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1차 토공사에 관하여 81,760m³의 골재(쇄석자갈)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사비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토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에 관하여 골재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다.』

○ 제1심 판결 7쪽 19행부터 9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2015. 12. 30.자 4억 4,000만 원 지급 부분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돈 외에 2015. 12. 30. 피고 자회사인 유한회사 J(이하 'J')을 통해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1차 토공사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토목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체결된 피고와의 공사계약(현장 사무소 설치, 공사현장 임목제거, 가설방음벽 설치 등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가 2015. 12. 30. 이 사건 농공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J을 통해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 5, 6,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6,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1차 토공사 계약 체결 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다면서 다른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나 공사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②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일부에 이 사건 토목공사현장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세금계산서 전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공사에 사용된 자재 등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1차 토공사를 시작하기 1년 전부터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의 처리방법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이 사건 1차 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차 토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도 상식에 어긋난다.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별개의 공사는 이 사건 1차 토공사 계약 체결 이전에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 공사대금을 고려하여 이 사건 1차 토공사 계약의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농공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1, 2차 토공사 계약 외에 별도로 체결한 공사계약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피고가 J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4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1차 토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10쪽 17행의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책임감리단의 7회 기성검사내역으로 원고가 진행한 공사의 기성고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책임감리단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또는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원고는 2017. 1. 25.경까지 이 사건 2차 토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였고, 후속업체는 2017. 2. 15.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목공사에 대한 제7회 기성내역 검토가 2017. 2. 28.에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일이 2017. 3. 3.이었으므로, 위 7회 기성검사내역에는 원고가 진행한 공사뿐만 아니라 후속업체가 진행한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위 7회 기성검사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율을 인정할 수 없다(이에 배치되는 갑 18호증의 일부 기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11쪽 8행부터 11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1차 토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251,550,000원(=공사대금 3,313,600,000원-다짐·살수 공사대금 62,050,000원)과 이 사건 2차 토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78,480,000원 합계 4,230,03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3,831,041,637원,

피고가 유한회사 F에 대위변제한 금액 121,780,780원, 피고가 2015. 12. 30. J을 통해 원고에게 변제한 4억 4,000만 원 합계

4,392,822,417원(=3,831,041,637원+121,780,780원+440,000,000원)을 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남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11쪽 20행부터 12쪽 8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1, 2차 토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4,392,822,417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합계 4,230,030,000원을

162,792,417원(=4,392,822,417원-4,230,030,000원)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162,792,417원을 초과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62,792,417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부대항소에 관한 판단

피항소인은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03조), 원고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인 2021. 5. 28.에서야 부대항소를 하였다.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4. 결론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하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오경미

판사홍승모

판사정순열